

<붙임 1>

상호의 변경 보고

※ 법 제418조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시 작성한다.

1. 변경내용-변경전후의 상호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
상 호	(주)파이어스톤파트너스	(주)파이어스톤투자자문

* 외국어 문자를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기재

2. 변경사유

금융위원회의 투자자문업 등록허가

3. 변경일 (등기일)

2018.02.09

■ 첨부서류

변경후 상호를 등기한 경우 상호의 등기부등본 1부